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스위스 · 독일 －

2024. 4.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성과	4
III. 주요 일정	7
1. 스위스 연방국세청 면담	7
2. 스위스 연방의회 방문	17
3. UN 제네바 사무소 방문	21
4.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면담	26
5. 독일 연방연금공단 면담	33
6. 독일 연방의회 방문	40
IV. 참고자료	45
1. 스위스 연방국세청 발제 자료	45
2. 독일 연방연금공단 발제 자료 (1)	58
3. 독일 연방연금공단 발제 자료 (2)	62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스위스 연방국세청 방문 및 면담
 - 스위스의 부가가치세 인상 등 주요 조세 관련 이슈 및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 스위스 연방의회 방문
 - 스위스 연방의회의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 UN 제네바 사무소 방문
 - UN의 기능 조사 및 자료 수집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방문 및 면담
 - 독일의 정년연장, 국민연금 개혁 추진 등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독일 연방연금공단 방문 및 면담
 - 연금의 자동조정장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배경 및 현황, 리스터 연금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 독일 연방의회 방문
 - 독일 연방의회의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2

출장단

- 단장: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 단원: 권아영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김우림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정훈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추계세제분석관보

3

방문 기관

- 스위스 연방국세청 [스위스 베른]
- 스위스 연방의회 [스위스 베른]
- 스위스 UN 제네바 사무소 [스위스 제네바]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독일 베를린]
- 독일 연방연금공단 [독일 베를린]
- 독일 연방의회 [독일 베를린]

4

출장 일정

□ 기간 : 2024. 4. 9.(화) ~ 4. 16.(화) (6박 8일)

일 정	주요 일정
4. 9. (화)	취리히 향발(인천 → 취리히), 베른 도착
4. 10. (수)	스위스 연방국세청 면담 스위스 연방의회 방문
4. 11. (목)	베른 → 제네바(육로 이동) UN 제네바 사무소 방문 베를린 향발(제네바 → 베를린)
4. 12. (금)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면담 독일 연방연금공단 면담
4. 15. (월)	독일 연방의회 방문 인천 향발(베를린 → 인천)
4. 16. (화)	인천 도착

II. 출장 성과

① 스위스의 조세제도 특징 및 최근 세법개정 동향 조사

- 스위스 연방재무부 산하 국세청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연방제 국가인 스위스의 조세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제도 및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확인
 - － 스위스 내 원천적인 과세권은 주(칸톤) 및 지방정부에 있으며, 연방 헌법을 통해 일부 세목에 한하여 연방정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음
 - － 그 결과 스위스의 재정분권 수준(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캐나다에 이어 OECD 2위 수준
- 스위스는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부부합산 과세 폐지 및 귀속임대료 폐지 등을 위한 논의 중
 -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부합산 및 귀속임대료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 이외에도 부유세(wealth tax) 및 법인자본세(corporate net worth tax) 등 특징적인 조세에 대해 질의·응답

② 스위스의 세입전망 주체 및 전망방식 현황 조사

- 스위스의 세입전망은 재무부 및 국세청 소속 전문가가 수행하되 외부 전문가 등이 일부 참여하여 의견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점 추정치(point estimates)로 제시하되, 최대·최소치를 함께 제시하여 거시적 변동 위험을 보완
- 세목별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전망하되, 제도 변화에 따른 세수 효과는 반영하여 차년도 세입을 전망하고 있음

③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재원 구성 및 최근 연금개혁 논의 동향 조사

- 독일 공적연금제도 재원은 기여금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구성
 - － 연방정부 보조금에는 양육수당에 과세하여 조성하는 재원이 포함됨을 확인
- 독일은 공적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연금 개혁패키지Ⅱ(Rentenpaket 2)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립금(‘세대자본’)을 마련하려는 논의 중임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 조사
- 현행 보험료율 상한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48% 유지를 위한 최저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임을 확인
 - － 소득대체율 48% 유지 시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

④ 독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과정 및 보완 조치 현황 조사

- 독일은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결정
- 은퇴연령까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질병 등에 따른 조기 은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실시하고, 고용과 비고용 사이의 중간단계를 마련하며, 연금 수령과 동시에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

⑤ 독일의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현황 조사

- 독일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완화하고 사적연금을 강화시키고자 리스터 연금 도입
 - － 본인 소득의 최소 4% 납입 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혜택 제공
- 공적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공적연금 의무가입자의 1/3, 대부분 저소득층)을 리스터연금 제도로 포괄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
 - －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 시 리스터연금 수령액 공제 등

III. 주요 일정

1 스위스 연방 국세청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0일(수) 10:00~11:40
- 장소 : 스위스 연방 국세청(Federal Tax Administration, 재무부 소속)
회의실
- 면담자
 - Fabian Baumer / 부국장(Vice Director),
조세정책 총괄(Head of Tax Policy)
 - David Staubli / 분석관(Economist),
조세정책 분야(Tax Policy)
 - Alowin Moes / 분석관(Economist),
조세정책 및 세입전망(Tax Policy & Revenue Estimation)

나. 스위스 조세 현황

□ 스위스는 연방국가(Confederation)로 26개 칸톤(Cantons)으로 구성

-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접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칸톤은 취리히(Zurich)로 스위스 영토의 북서쪽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으며,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약 2/3가 독일어를 사용
- 스위스의 기초지방단체 수는 과거 3,000여개를 초과했으나, 최근 통폐합 등으로 현재는 2,100여개 수준

□ 스위스의 재정분권(Tax decentralization) 수준은 OECD 중 2위

- OECD는 재정분권 수준을 전체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의 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2위 수준(참고로 1위는 캐나다 50%)
- 연방세(Confederation Tax)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세, 기타 순으로 구성
- 지방세(Local Tax)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유세, 법인자본세(Corporate net worth tax) 순으로 구성

□ 스위스 연방-지방 정부 간 조세 배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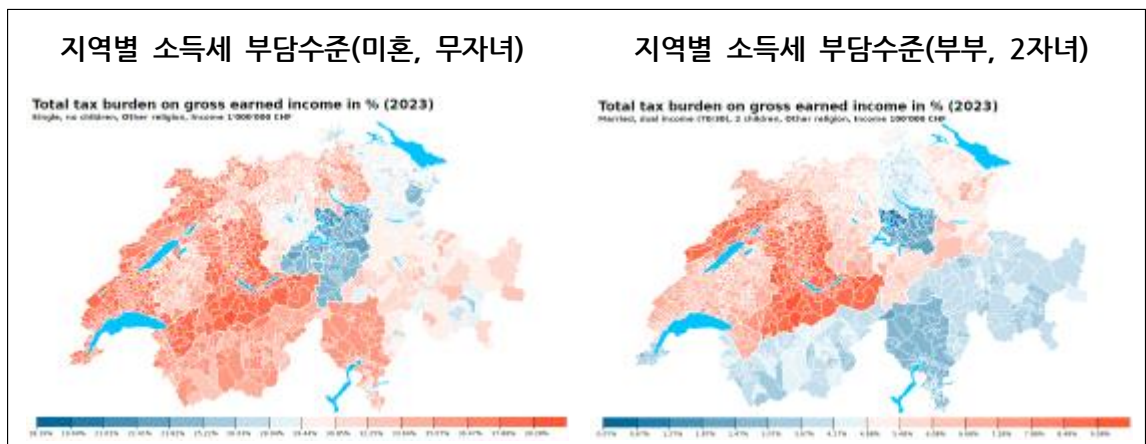
- 스위스는 헌법을 통해 지방정부(칸톤)의 과세권을 폭넓게 허용
 - (Art. 3 Cantons) The Cantons are sovereign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ir sovereignty is limit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 They exercise all rights that are not vested in the Confederation.

“칸톤은 연방 헌법에 의해 권한을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주권을 가진다. 칸톤은 연방에 귀속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에서 과세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세목(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각 칸톤 및 지자체가 자주권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연방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세목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갖음

□ 스위스의 지역 간 세부담(소득세) 차이

- 전반적으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스위스 서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지역 간 세부담 차이는 지역마다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상이한 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율인하 경쟁을 벌인 결과 등으로 해석 가능

□ 최근 스위스의 조세 관련 이슈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종전 다수의 칸톤에서 일반적인 법인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 완료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향후 각 칸톤은 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됨
- 부부합산 과세 폐지
 - 스위스 소득세의 종전 부부합산 과세방식은 누진적인 소득세 체계에서 과도하게 독신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존재하였음
 - 2024년 2월 연방의회에 ①조세중립성, ②부수입자의 노동 장려, ③성평등 제고를 위해 개인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 귀속임대료(Imputed rental value) 폐지
 - 스위스는 자가주택 보유자의 귀속임대료를 사실상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산정된 귀속임대료는 가산하되, 이자비용 및 유지·수선비 등은 공제)
 - 스위스 국무회의 경제·조세 위원회 등은 귀속임대료 과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방향을 설정하여 개정을 논의 중

□ 스위스 세입전망 관련

- 국세청 소속 전문가가 문서화된 프로세스 및 예측 모델을 정기적으로 점검·검토하며, 과정에서 숙련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 제시
- 월별 실적, 경제변수 등을 고려하여 전망한 값을 기반으로 하며, 변경된 제도로 인한 효과를 가감하여 최종적인 예측값을 산출
 - 전망치는 점 추정치(point estimates)로 제시하되, 경제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최소치를 제시하여 거시적 변동 위험을 보완

- 많은 과세자료가 칸톤 단계에서 생산되므로 전망을 위한 자료 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함
- 세입 전망시 세목별로 다양한 변수로 활용하되, 특이요인을 반영함
 - 부가가치세: 명목GDP(국내최종소비의 대리변수로서 활용)
 - 소득세: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소득(6개월의 시차(lag))
누진세율을 고려한 세수탄력성(factor 2) 활용
 - 법인세: 회계상 이익 $\neq$ 세무상 이익
(외국인 소득, 결손금 이월공제 7년)
 - 인지세: 주식·채권시장 거래량, 보험·증권 등 발행규모, 이자율 등
 - 원천징수세: 배당금, 이자율, 환급시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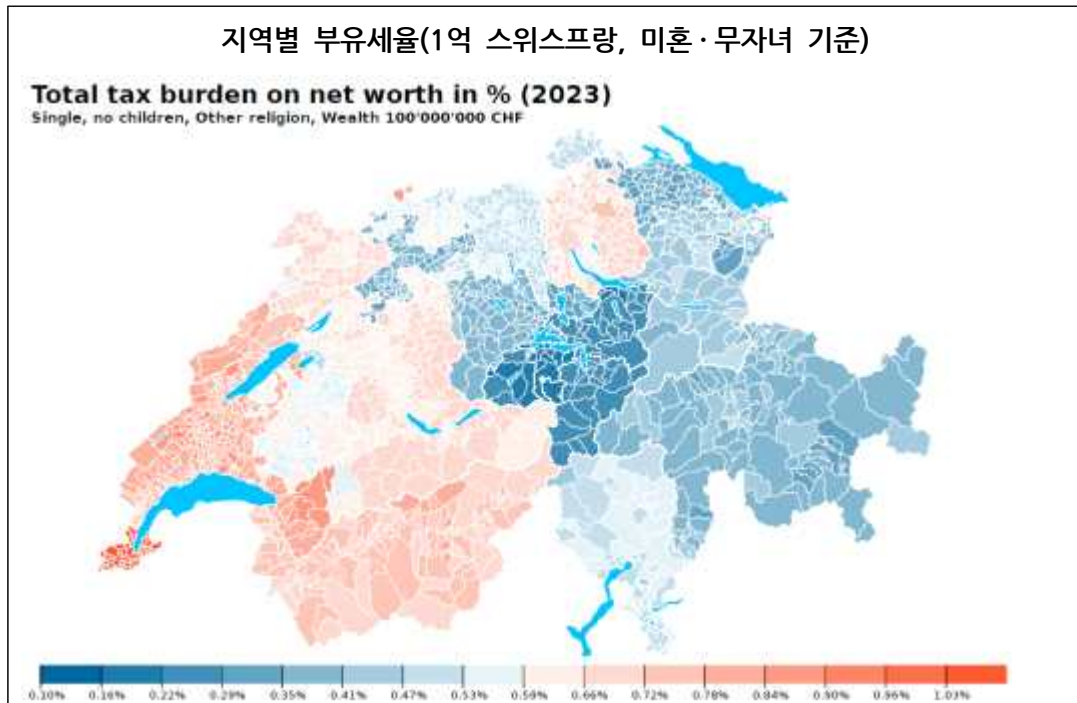
다. 주요 면담내용

□ 스위스 연방-지방 정부 간 조세 배분 원칙

- 연방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세목(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등)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갖음
- 또한 조세는 보편성(Universality), 공평성(Uniformity), 담세력(Ability to pay)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갖추어야 함 (Art. 127 Principles of taxation)
- 스위스 연방 헌법은 세금 간 조화(Tax harmonization)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대상, 과세목적, 과세기간, 절차 등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rt. 129 Tax harmonization)

□ 스위스의 칸톤 단위의 부유세(wealth tax) 현황 및 운영의 어려움

- 스위스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유세를 운영하고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부유세를 운용하는 국가는 OECD에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가 존재함
- 지역별로 부유세율이 다른데, 가장 높은 제네바의 경우 순자산 1억 스위스 프랑(미혼·무자녀)의 납세자에 대해 1%가 넘는 부유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매년 발생하는 소득(flow)이 아니라 순자산(stock)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 1%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스위스는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없으므로 대규모 주식매각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스위스의 과세체계가 유리할 수 있고, 자산의 평가액이 시장가치에 비하면 낮게 형성되어 납세자 저항이 적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부유세 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사람의 부를 숫자로써 평가해야 한다는 점임
 - 부유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자동차 등 광범위하며,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주택 등도 평가하여 과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스위스의 각 칸톤은 부유세를 지난 150년간 운용해왔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적정한 수준에서 납세자 큰 저항없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2022년 스위스 부가가치세 인상 경과 및 여론 수렴 노력

- 스위스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왔으며, 미국과 달리 최종적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목적이 연금재원 마련으로 명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스위스의 법인 자본세(Corporate net worth tax)와 일반 법인세의 차이

- 일반적인 법인세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income)에 과세하는 반면, 스위스의 법인 자본세(Corporate net worth tax)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제도임
- 소득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적인 담세력을 바탕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인두세(Poll tax)와 같은 성격의 과세
- 경기불황 및 호황과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재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귀속임대료(Imputed rental value) 폐지 배경

- 귀속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만큼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향유한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 이론상 귀속임대료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현행 체계상 주택의 유지·보수비용, 담보 대출(Mortgage)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런 체계가 집 소유주가 대출을 갚을 유인을 약화시키고 대출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했으며,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귀속임대료를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위스의 조세제도 개편 노력

- 스위스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2008년부터 CO2 levy(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 해당 부담금은 화석연료(난방유, 천연가스, 석탄 및 기타 화석연료)에 부과함
- CO2 levy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부터는 이산화탄소 1톤당 120 스위스 프랑을 부과하고 있음
- 부담금 수입의 2/3은 전체 국민에게 재분배되며, 나머지 1/3은 친환경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생 에너지 지원 등에 투입됨

라. 방문 사진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0일(수) 15:00~16:00
- 장소 : 스위스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
- 주요 내용
 - 스위스 연방의회 시찰을 통해 연방의회 구성과 입법절차, 정치제도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나. 스위스 연방의회 현황

- 구성
 - 연방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26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 보유
 - 상원(Council of States)
 - 20개 주(Kanton)에서 각 2명의 의원, 6개주에서 각 1명의 의원을 선출, 상원 총 의석수는 46석
 - 상원의원은 주별로 상이한 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 하원(National Council)
 - 하원 의석은 총 200석으로, 각 주별 의석수는 주민 수(4만명 기준/현재 최소 1석에서 최대 35석)에 따라 배정
 - 취리히주는 35명을 선출하는 반면, 글라루스 등 소규모 6개주는 1명 선출
 - 하원의원은 비례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

□ 의장단

- 상하 양원 의장은 매년 연방의회에서 마지막 회기 첫날 1년 임기로 선출
- 하원의장이 양원 합동회의 의장 겸임(연방의회 서열 1위)

□ 회기

- 정기회의는 연 4회(3·6·9·12월) 개최되며, 회기는 각 3주
- 연방의원들은 비회기 기간 중에는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의회 회기 기간에만 베른에 체류

□ 입법절차

- ① 법률안 제출
 - － 연방각의의 법안제출, 의원발의, 국민발안*의 세 가지 형태
 - － 헌법개정안에 한하며, 유권자 10만명 이상 서명시 이중과반수(전체 주민 및 칸톤 과반 찬성) 국민투표 실시
- ② 의견청취(consultation)
- ③ 법률안 또는 검토보고서 공포
- ④ 연방 상·하원에서 논의
- ⑤ 소관 위원회 심사
- ⑥ 상세 심의
- ⑦ 양원에서 법률안 채택
- ⑧ 관보 게재
 - － 위 법률안에 반대하는 시민 5만 명 이상 서명시 찬반 국민투표 실시

□ 정치제도의 특성

- 스위스의 민주정치는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통한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등 주로 3가지 형태로 행사
- 현재와 같은 독특한 스위스 국가제도가 형성되게 된 배경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민, △높은 교육·문화 수준, △다양한 언론매체의 영향 등이 요인
- 국가권력은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연방(Eidgenossenschaft) 정부, 주(Kanton) 정부, 시·군(Gemeinde) 정부 등 3단계로 분산 위임

다. 방문 사진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1일(목) 16:00~17:00
- 장소 : UN 제네바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주요 내용
 -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 사무소 시찰을 통해 UN의 역할과 구성, UN 제네바 사무소의 조직 및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나. UN 제네바 사무소 현황

-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개요
 -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이는 다자 회의 기구
 - 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범세계적 기구로서 창립 당시 회원국은 총 51개국, 오늘날에는 전세계 193개국 가입 중
 - 과거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설립하였으나 실패했던 국제연맹의 역할을 대신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1945년 10월 24일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

- UN의 설립 목적은 '전쟁 방지를 위한 분쟁 중재', '집단적 안보 체제 확립', 그리고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등임(UN 헌장 제1조)¹⁾

□ UN 제네바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1946년 설립된 UN 제네바 사무소는 유엔의 4개 사무소(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중 뉴욕 다음으로 큰 규모
- 뉴욕 본부가 정치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제네바 사무소에서는 건강, 인권, 난민과 이주, 군축 관련 업무에 집중
- 국제연합(UN)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1919년 제네바를 본부 소재지로 결정하고, 1929~1936년간 본부 건물인 Palais des Nations을 건축하였으며, 국제연맹이 1946년 국제연합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 건물도 국제연합 사무소로 변모
- UN 제네바 사무소는 UN 사무국의 일부로서 회원국 간의 대화, 면담, 회의 등 지원을 위한 회의 시설 유지 및 회의 서비스 제공(통역, 기술 지원, 문서 편집 및 배포 등), 회의 장소 확보 등의 업무 담당

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re: 1.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2.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3.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4. To be a centre for harmonizing the actions of nations in the attainment of these common ends.

- 현재 UN 제네바 사무소에는 전 세계에서 1,6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네바 소재 40개 이상의 UN 시스템 조직 및 단체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제네바에 본부를 둔 기구

- | | |
|--------------------|--------------------|
| - 유럽 경제 위원회 | - 유엔 군비 축소 연구소 |
| - 국제 교육 사무국 | - 유엔 훈련 연구소 |
| - 국제 컴퓨터 센터 | - 유엔 기획 서비스 사무소 |
| - 국제 노동 기구 | - 유엔 개발 평화 스포츠 사무소 |
| - 국제 무역 센터 | - 유엔 인구 기금 |
| -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 - 유엔 사회 개발 연구소 |
| - 유엔 보수 위원회 | - 세계 보건 기구 |
| - 유엔 무역 개발 회의 | - 세계 기상 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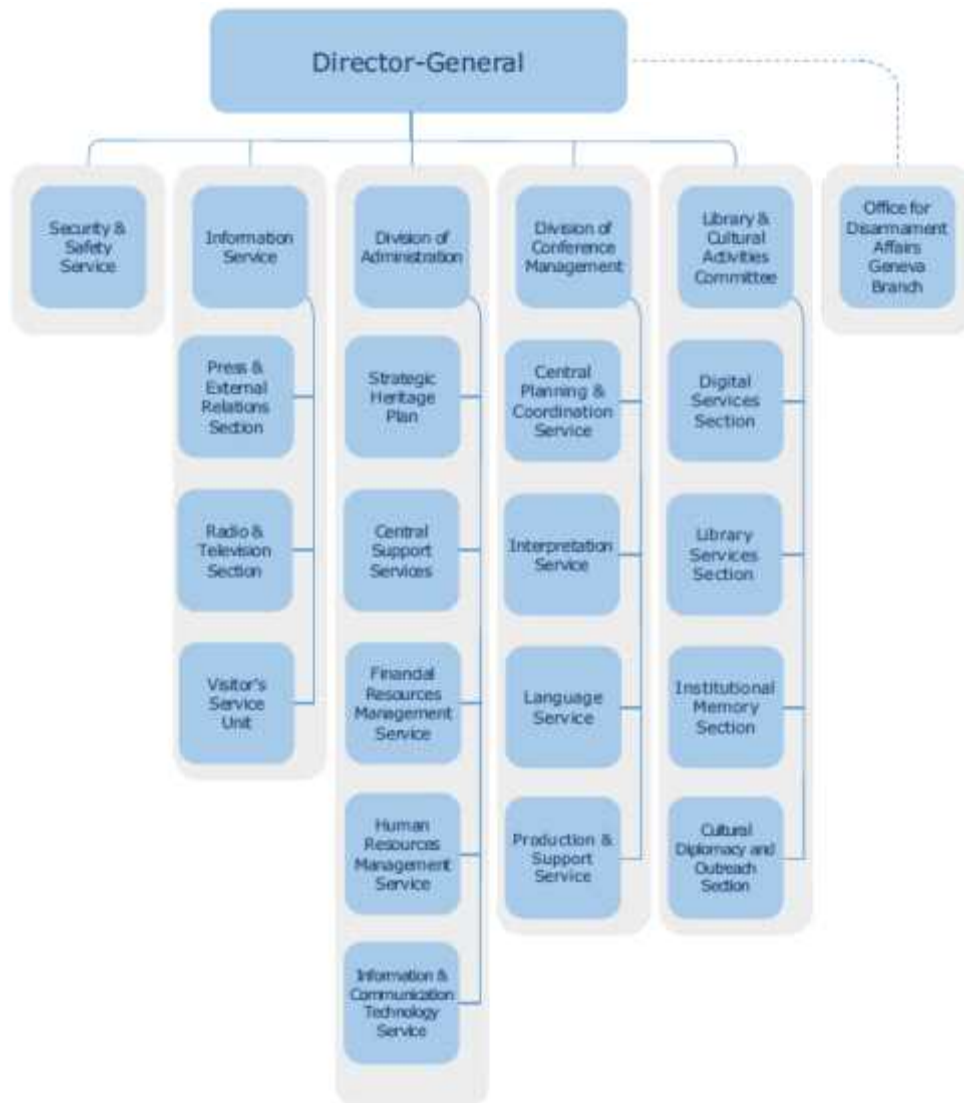
※ 제네바에 지점을 둔 기구

- 국제 원자력 기구 (본부는 빈)
- 유엔 환경 계획 (본부는 나이로비)
-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본부는 파리)
- 유엔 공업 개발 기구 (본부는 빈)

□ 조직도

- 현재 UN 제네바 사무소는 사무소장(Director-General, Tatiana VALOVAYA) 아래 회의 관리 및 지원, 정보·공보 서비스, 행정, 도서관, 보안 및 안전 서비스 등 5개의 국과 군축회의 지원 사무소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Geneva Branch)로 구성

<UN 제네바 사무소 조직도>



다. 방문 사진



4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2일(금) 10:00~11:30
- 장소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회의실
- 면담자
 - Dirk Baller / 대외협력부장(Head of Division ‘Protocol, Events, International Visitors Service, Language Service’)
 - Michael Rohrbach / 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 재정계산 담당
 - Anna Hyla / 법률 담당
 - Kevin Schabiner / 국제관계 담당
 - Aaron Tiener /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리스터연금 담당
 - Hannah Hoffmann / 법률 관련 인턴

나. 독일 공적연금제도 현황

□ 독일 공적연금제도는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노령·장애·유족 연금 급여를 지급

- 월 소득이 520유로 미만인 경미고용종사자(Geringfügig Beschäftigte)도 의무가입자에 포함되며, 실직, 장애, 직업학교 또는 대학 교육, 임신 또는 모성휴가, 실업 수당 수급 중인 사람에게 크레딧을 부여하여 가입자로 포괄함
- 노령연금의 경우 5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래하면 수급
 - 35년 이상 가입자는 63세부터 감액된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단계적으로 상향조정), 45년 이상 가입자는 감액 없이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 주요 재원은 기여금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구성

- 최근 보험료율은 18.6%를 유지
- 연방정부 보조금은 ① 일반연방보조금, ② VAT를 통한 추가연방보조금, ③ 환경세를 통한 추가연방보조금으로 구성
 - 2024년 2월 추정 기준, 연금지출의 25.9%를 연방보조금으로 총당(일반연방보조금 16.7%, VAT를 통한 추가연방보조금 4.5%, 환경세를 통한 추가연방보조금 4.7%)

□ 주요 연금개혁 연혁

- (2001년) 미래 보험료율의 목표를 2020년 20%, 2030년 22% 이하로 설정하고 리스터연금 제도 도입

- 독일은 매년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연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율이 연금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는데, 2001년 연금개혁 당시 재정계산 결과 2030년 보험료가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2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보험료율 억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감독원이 인증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리스터연금 제도를 도입
- 정부는 리스터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 (리스터연금 보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율은 2002년의 경우 1%, 2004년 2%, 2006년 3%였고, 2008년부터는 4%로 유지)
- (2004년) 급여 계산 시 ‘지속가능성 계수(Nachhaltigkeitsfaktors; sustainability factor)’를 적용
 - 연금포인트*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는 소득수준의 변화 (소득계수 활용)만 고려하였으나 2001년부터 기여율의 변화(기여율계수 활용)가 고려되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는 부양비 변화를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
 - *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이 연금포인트로 전환되는데, 이때 연금포인트는 해당연도 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 비율을 가리킴. 누적된 연금포인트를 연금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립된 연금포인트를 현재가치화하여 합산
- (2007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연금 수급개시연령(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 수급개시연령: 1947년 전 출생자 65세, 1947년 출생자 65세 1개월, 1948년 출생자 65세 2개월, 1949년 출생자부터 2개월씩 상향조정, 1964년 이후 출생자부터 67세

다. 주요 면담내용

□ 독일 공적연금 구조 및 재정 개요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3가지 기둥으로 구성
- 공적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매년 결정되고,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
 - 매년 11월, 차년도에 대한 예상되는 보조금과 지출규모를 계산하고 수입이 부족할 경우 보험료율을 올림
 - 연방정부 보조금 중에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양육 보조금에 과세하여 조성하는 재원도 포함
- 최근 독일 노동시장은 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의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어 연금재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입자 수는 2023년 4,980만명(그 중 3,470만명이 의무가입자)에서 2025년 4,600만명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870만명에서 2025년 2,24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노력, 직업훈련, 노인인구의 경제참여, 전문인력의 이민 등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음
 - 특히,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 중(노동연한, 노인 인구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 등)

□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 연금개혁패키지Ⅱ(Rentenpaket 2)

- (개혁의 목표) 연금급여 수준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현재와 같은 48%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
 - 향후 소득대체율 48%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개혁방안①) 연금재정의 추가 재원으로 ‘세대자본’이라는 명칭의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
 - 세대자본은 2036년까지 120억 유로를 적립하는 것을 계획
 - 다만, 독일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
 - (개혁방안②) 보험료율 상한 폐지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
 - 소득대체율 48%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보험료율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
 - 이 경우, 연금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으나 세대자본이 마련되면 연금 보험료율 증가 수준을 억제할 수 있음
- ※ 향후 최저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 연금급여액 산정 시 사용되는 지속 가능성 계수는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될 것

□ 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과정 및 후속조치

- 현재 독일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7세로 상향조정 중에 있으나 67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있음
-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지나서도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연금 수령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연금 수령액과 추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누진과세 문제(소득이 늘어날수록 누진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 현재 독일 내 390만명의 자영업자 중 90만명만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7%는 과거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현 제도상 의무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금에 의무가입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
 - 다만, 공적연금 가입과 사적연금 가입 간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 향후 독일의 경제 변화 등이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대응책

- 현재 독일은 IT인력과 복지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인력 이민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으며,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되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라. 방문 사진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2일(금) 14:00~16:30
- 장소 : 독일 연방연금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회의실
- 면담자
 - Claudia Kintscher / 대외협력부장(Head of Uni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Octavio Morales / 연구개발부 분석관
 - Christoph Freudenberg / 연구개발부 분석관
 - Ravi Martin Grüneberg / 대외협력 담당

나. 독일 공적연금제도 현황

□ 독일 공적연금제도는 급여 계산 시 임금계수, 기여율계수, 지속가능성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계수 도입 배경) 보험료율 상한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 등에 소요되는 부가적 인건비를 낮추는 동시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함
- (지속가능성 계수 구성) 보험료 납부자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을 기초로 하나 단순 사람 수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을 표준화하여 계산
 - － 보험료 납부자 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즉, 동일 조건에서 고령화되는 경우), 계수가 0보다 작아져 급여가 낮아짐
- (지속가능성 계수 역할) 과거에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해 계수가 급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경험이 있음
 - － 다만, 2027년부터는 급여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 향후 지속가능성계수로 인해 연금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득대체율 48%를 유지하기 위한 개혁을 준비 중

□ 독일은 2007년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상향조정 결정

- 독일은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이 동일하고 함께 조정됨
- (조정 성공 요인) 당시 노동시장 상황이 좋았고(경제적 요인), 당시 연방정부는 69%의 득표율을 얻은 연립정부인 상황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 중 하나가 노동조합과 친밀도가 높음(정치적 요인)

- (특징) 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예외 규정을 둠
 - 45년 이상 납입하면 감액 없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함(한 해에 은퇴자의 30%가 감액없이 조기에 수령함)
 -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조정에 대한 논의 중
- (긍정적 효과) 연금재정의 지출이 억제되는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부과방식이므로 지출 억제는 보험료율 인상 억제로 이어짐), 60~64세 노동시장 참여율도 증가
- (도전 과제 및 해결 방안) 은퇴연령까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보호 필요
 - 자발적 비고용을 포함하여 은퇴 인구의 1/4가 은퇴연령 2년 전에 이미 비(非) 고용상태가 됨
 - 질병 등에 따른 조기 은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실시하고, ‘은퇴를 위한 순조로운 전환’이라고 부르는 고용과 비고용 사이의 중간 단계를 마련하며,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장기적으로 노인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과제임

□ 독일은 공적연금제도 외에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Rente)을 도입하여 운영 중

- (배경) 공적연금의 역할을 완화하고 사적연금을 강화시키고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는 리스터연금 도입
- (주요 내용) 본인 소득의 최소 4% 납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세 감면 혜택 제공
 - 자녀가 없는 경우 납입금의 1/3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많은 경우 정부 지원율이 납입금의 100%에 도달할 수도 있음

- (가입 현황) 근로자의 30%가 가입하고 있음
 - 도입 후 첫 10년간 가입률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10년간 정체된 상황
 - 근로자의 50%는 각 회사를 통한 연금상품을 선택(자녀가 없는 경우 회사를 통한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공적연금 의무가입자의 1/3(대부분 저소득층)가 공적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리스터연금 제도로 포괄하기 위한 노력 중
 - 정보제공 및 홍보 노력 강화 등 투명성 향상 노력
 - 연금상품에 대한 부담금 상한 설정
 - 공공부조 등의 수급자는 리스터연금을 수령할 경우 공공부조 수급액이 삭감되어 리스터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 부조 대상자 선정 시 리스터연금은 공제되도록 변경

다. 주요 면담내용

□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수용성

- 보험료율의 변경은 최종적으로 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동조정장치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적 개입·논쟁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
 - － 다만,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에 의한 급여 조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소득대체율 48%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지속가능성 계수의 역할이 사라지고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
 - － 현재 최저소득보다 연금수급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발생하는 것이 정책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없애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소득대체율 48%를 유지하고자 함
-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세대자본(적립금)을 도입하여 완화하고자 함
 - － 세대자본은 연방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

□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연방정부의 보조금 변화 여부

-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복잡한 체계를 통해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형태임

□ ‘은퇴를 위한 순조로운 전환’의 주요 내용

- 연금을 50%만 수령하면서 파트타임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

-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노력 중
 -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대략 월 500유로까지의 소득(mini job)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세금 고려시 mini job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조세 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노력 중
- 2020년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을 감액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감액을 점진적으로 없애면서 모니터링 중
 - 최근 초기 결과물에 따르면 아직 노동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노인의 일부가 감액을 없애기 전부터 이미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기 때문으로 보여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
- 연금공단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의 질병예방을 위한 재활 지원을 하고 있음
 - 연금재정을 재원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및 건강강좌 실시, 재활 클리닉 운영 등

□ 소득계층별 리스터연금 가입 및 정부 보조 현황

- 소득계층별 가입률은 비슷하지만 고소득층이 약간 더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중
- 정부는 매년 리스터연금에 100억 유로 정도를 투입

□ 최근 논의 중인 리스터연금 개혁 방안

- 리스터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리스터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원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 조문 때문
- 원금보장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 중

라. 방문 사진



가. 개 요

-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10:00~11:00
- 장소 : 독일 연방의회(Reichstagsgebäude)
- 주요 내용
 - 독일 연방의회 시찰을 통해 연방의회 구성과 입법절차, 정치제도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나. 독일 연방의회 현황

(1) 연방하원(Bundestag)

- 임기 : 4년
- 선출방법
 - 유권자(18세 이상) 1인 2표제
 - 제1투표 : 지역구 의원 선출(299개 지역구)
 - 제2투표 : 정당 명부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299명, 지역구 의원 수와 동일)
- 의석 배분 방식
 - 1단계: 각 주 차원에서 정당별 의석수 잠정 결정

- 인구비율에 따라 선거전 미리 결정된 주별 총 의석수를 주내 정당별 제2투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우선 분배(생트-라게(Sainte-Lague) 방식 적용)
- 특정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동 분배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지역구 당선의석도 인정 (초과의석)
- 2단계: 연방차원에서 정당별 총 의석수 확정
 - 주별로 각 정당에 분배된 의석수를 연방차원에서 정당별로 합산한 후, 정당 간 전국 총의석수의 비율이 정당간 전국 제2투표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조정
 - 정당별로 기존 의석수를 인정한 채, 제2투표 득표율에 맞도록 각 당에 의석을 추가배분 (균형의석)
- 3단계: 각 주 차원의 비례대표 당선자 확정
 - 위와 같이 확정된 정당별 전국 총의석을 동 정당의 주별 득표율에 따라 주 비례대표 리스트로 배분

□ 비례대표 명부

- 비례대표 명부는 16개 연방주 단위로 작성
 - 비례대표 명부는 지난 선거에서 5석 이상 차지한 정당만 제출하며, 소수 정당의 경우 2,000명의 지지서명으로 명부 제출 가능
 - 지역구 출마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제1투표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비례명부의 차순위자 당선 승계

□ 주요 권한

- 법률 제정, 연방총리 선출, 정부활동 감시

(2) 연방상원(Bundestag)

- 주총리, 장관 등 16개 주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
 - 상원의장은 각주 총리가 1년 임기(11.1-익년 10.31)로 교대로 수임
 - 상원의장은 대통령 유고시 업무 대행
- 각 주는 인구수에 따라 3-6개 투표권 보유(총 69표)
 - 인구 200만 이하 주 3표 :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포어 포머른, 자알란트
 - 인구 200만 이상 주 4표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라인란트-팔츠, 쉬레스비히-홀스타인
 - 인구 600만 이상 5표 : 헤센
 - 인구 700만 이상 6표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

(3) 입법권한

- 연방법률 제정권
 - 법률안 제출권은 연방정부, 상원, 하원의원(최소 하나의 교섭단체 혹은 의원 5%가 지지할 경우) 보유
 - 연방정부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친 후 하원에 제출되며, 상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하원에 제출

□ 법률안 처리 절차

- 법률안은 반드시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기본법 및 각 주의 이익에 관계되는 법률안 등)과 동의불요 법률안으로 구분
- 하원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되며, 상원 동의가 불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원은 이의 제기권을 보유
- 상원은 법률안을 둘러싼 하원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하원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Vermittlungsausschuss)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 및 연방정부도 동 위원회 소집 요청 가능
-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의 경우, 궁극적으로 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되며, 상원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상원이 이의 제기권을 행사하더라도 연방하원이 상원의 이의 기각 가능
- 조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 또는 폐기 권고가 있는 경우, 하원은 동 법률안을 재차 심의하여, 표결

다. 방문 사진



IV. 참고자료

1

스위스 연방 국세청 발제 자료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Confédération suisse
Confederazione Svizzera
Confederaziun svizra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P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Presentation for the Korean NABO-Delegation
Bern, 10 April, 2024**

Alwin Moes, Senior Economist
David Staubli, Economist
Swiss Federal Tax Administration



Agenda

- Switzerland as a federalist state
- Tax mix
- Institutional setting in Switzerland
- Income and wealth tax burden across Switzerland
- Ongoing tax reforms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P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oes and David Staubli

2



Switzerland is a federalist state

= 2100
Municipalities



Confederation

26 Cant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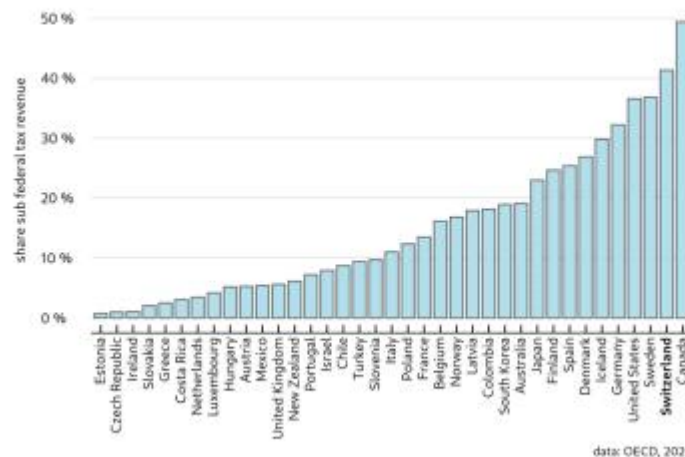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ovin Mies and David Stautli

3



Tax decentralization in OECD countries



data: OECD, 2020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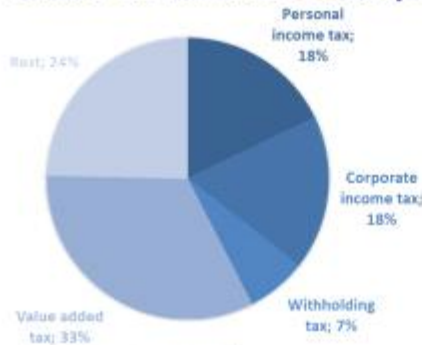
The Swiss tax system / Alovin Mies and David Stautli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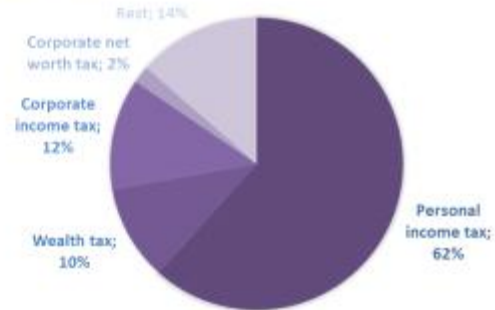


Tax mix federal and sub-federal level

Share of total revenue per type of tax



Confederation; total tax revenue = 71.5 bn Swiss francs (2021)



Cantons + municipalities; total tax revenue = 82.6 bn Swiss francs (2021)

Personal income tax including taxes at the source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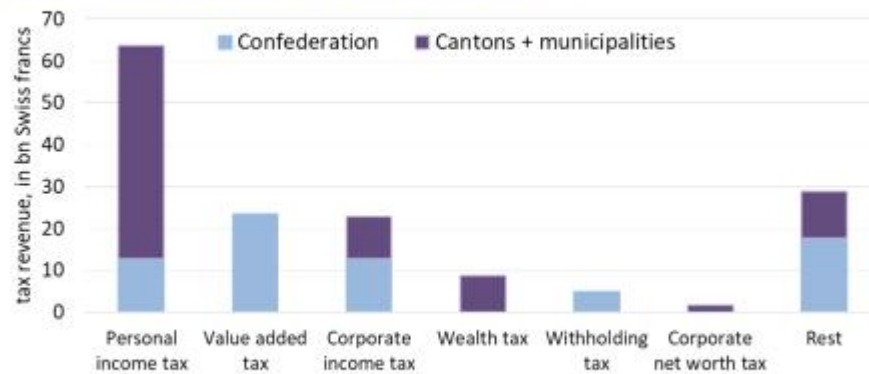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dt

5



Tax revenue of selected types of taxes

Share of federal and sub-federal level



Federal and sub-federal level; total tax revenue = 154.1 bn Swiss francs (2021)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dt

5



Institutional setting in Switzerland

Key provisions in the Federal Constitution

Art. 3 Cantons

The **Cantons are sovereign**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ir sovereignty is limit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 They exercise **all rights** that are **not vested in the Confederation**.

- Cantons can levy **any kind of taxes** unless explicitly ruled out by the Federal Constitution (e.g. value added tax or tariffs).
- The Confederation can only levy taxes based on an **explicit constitutional provision** (e.g.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 value added tax).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bli

7



Institutional setting in Switzerland

Key provisions in the Federal Constitution

Art. 127 Principles of taxation

² Provided the nature of the tax permits it, the principles of **universality** and **uniformity** of taxation as well as the principle of **taxation according to ability to pay** are applied.

- All levels of government have to respect the principles of universality, uniformity, and taxation according to ability to pay.
- The most hotly debated is the **ability-to-pay principle**, which rules out regressive income taxation (based on a Federal Court decision).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bli

8



Institutional setting in Switzerland

Key provisions in the Federal Constitution

Art. 129 Tax harmonization

² Harmonisation shall extend to tax liability, the object of the tax and the tax period, procedural law and the law relating to tax offences. Matters **excluded** from harmonisation shall include in particular **tax scales**, **tax rates** and **tax allowances**.

- The Confederation shall legislate on **formal** tax harmonization (tax base). **Material** or **substantive** harmonization (tax burden) is ruled out.
- Cantons are required by federal law to raise a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 as well as a **wealth** and a **corporate net worth tax**.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b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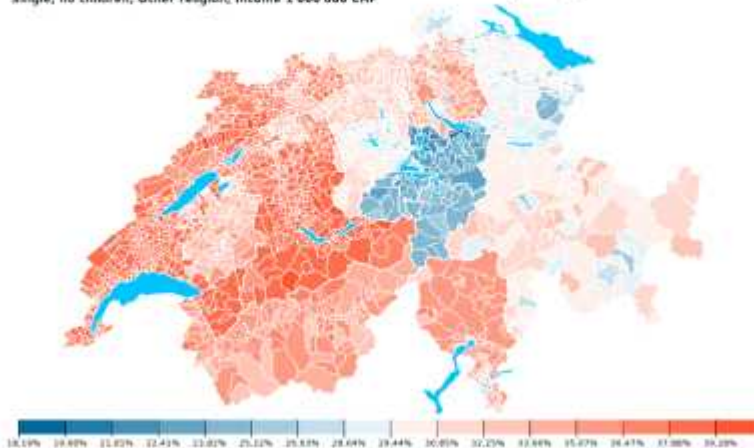
9



Personal income taxes in Switzerland

Total tax burden on gross earned income in % (2023)

Single, no children, Other religion, Income 1'000'000 CHF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b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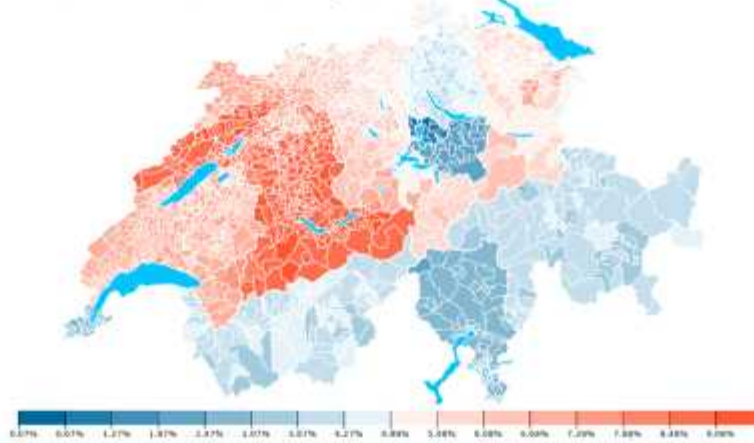
10



Personal income taxes in Switzerland

Total tax burden on gross earned income in % (2023)

Married, dual income (70/30), 2 children, Other religion, Income 100'000 CHF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b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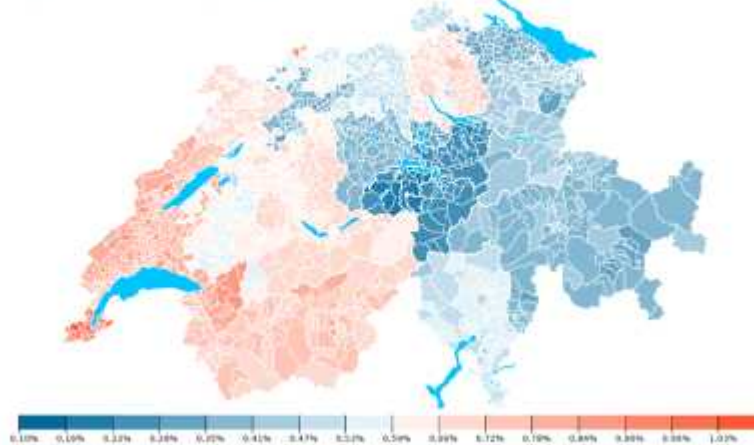
11



Wealth taxes in Switzerland

Total tax burden on net worth in % (2023)

Single, no children, Other religion, Wealth 100'000'000 CHF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b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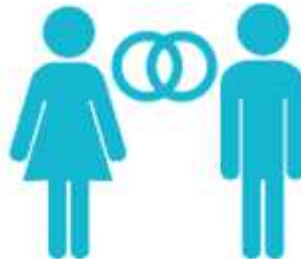
12



Selected ongoing tax reforms



15% minimum tax



Individual taxation



Imputed rental value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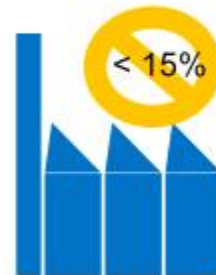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tli

13



G20/OECD 15% minimum tax

- The regular corporate tax rate is below 15% in many cantons.
- The Federal Council has implemented the supplementary tax in Switzerland by Jan 2024.
- Goal: Prevent erosion of the tax base in favor of other countries.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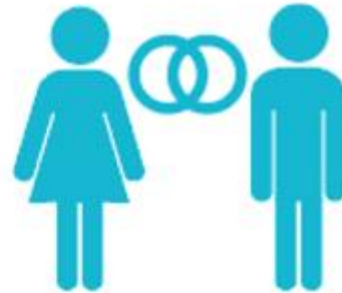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tli

14



Individual taxation

- In a progressive tax system the unit of taxation matters.
- Today married couples are taxed jointly.
- Federal Council reform proposal to shift to individual taxation (Feb 2024).
- Goals: (1) civil status-neutral taxation; (2) work incentives for second earners; (3) gender equality.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tli

15



Imputed rental value

- Imputed rental value on residential property is taxable in Switzerland
- Interest and maintenance costs are deductible.
- Parliament initiated a system change.
- Imputed rental value shall be abolished and deductions limited.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tli

16



Part II: Tax Revenue Estimation

- Estimation process
- VAT
- PIT and CIT
- Stamp duties
- Withholding Tax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tli

18



Estimation process

- FTA and FFA: bottom-up versus top-down
- Influence of external forecasts: the quality of our forecasts depends decisively on economic forecasts. Complication: turning points are particularly tricky.
- The model – a documented process
- Regular updating and review
- Experienced experts
- Supervision and audit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FDF
Federal Tax Administration FTA

The Swiss tax system / Alwin Mies and David Stautli

19



Estimation process (cont.)

- Revenue is estimated and budgeted on an annual basi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monthly data can and do affect updated forecasts (projections).
- Extrapolation of intra-year developments is inherently risky.
- Changes in tax policy are typically modeled by adding/deducting the estimated effects.
- Point estimates are complemented with scenarios („good“ and „bad“ case) for possible shocks.



VAT

Main driver

Nominal GDP (as a proxy for domestic final demand)

Theoretically not fully correct, but

- empirically reliable and
- widely forecast

Supplemented by special effects and measures



Federal direct tax - PIT and CIT

Main drivers

Personal income tax

- Income with annual inflation correction (6 month lag)
- Progression => Income elasticity (factor 2)

Corporate income tax

- Taxable profit - does not equal accounting profit:
 - foreign income
 - loss carry forward (up to 7 years)



Federal direct tax - PIT and CIT (2)

Tax is due in the year following the tax year. First billed provisionally; final assessment after processing tax declaration.

- Poor data as cantons responsible for assessment and collection
- Budgeted revenue comes in early (5%), when due (80%) or up to several years thereafter (remaining 15%).
- PIT rate schedule adjusted annually for bracket creep.



Stamp duties

Main drivers

Transfer duty:

- Taxable stock market turnover

Issuance duty:

- Issuance of shares, bonds and money market securities
- Interest rates, duration

Insurance duty:

- Premiums paid on liability, collision and certain other non-life insurances



Withholding tax

Main drivers

- Dividends
- Interest rates
- Tax morale (residents)
- Double tax agreements (non-residents)
- Timing of reimbursement requests

Structural forecast models fail to produce satisfying results.



Withholding tax (2)

Forecasting method: robust Holt-Winters smoothing

- *Forecast error:* minimised by means of a time series model.
- *Forecast level:* latest observations are more highly weighted (exponential smoothing).
- *Trend:* possible trend is automatically recognised and modeled together with level (Holt-Winters smoothing).
- *Outliers:* Reduced influence of years with very high/low revenue (robust estimation => stabilisation).



Other taxes: CO₂-levy

- Levied in Switzerland since 2008
- Imposed on fossil thermal fuels (heating oil, natural gas, coal and other fossil fuels)
- Levy set at CHF 120 per ton of CO₂
- Total revenue 1,2 bn CHF
 - One third of tax revenue is used to promote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 construction and renewable energy
 - Rest redistributed to the population via health insurance

Grundlagen zum Nachhaltigkeitsfaktor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Besuch einer koreanischen Delegation
Berlin, 12.0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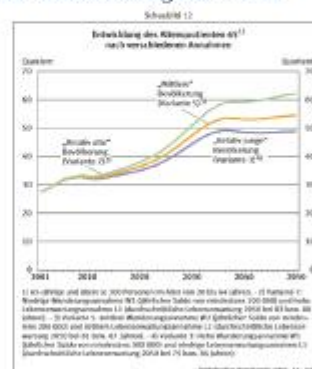
Octavio Morales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Abteilung Forschung und Entwicklung

Warum wurde der Nachhaltigkeitsfaktor eingeführt?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 ▶ Knüpft an vorangegangene Reformen an: das Altersvermögens – und Altersvermögensergänzungsgesetz
- ▶ Hochrechnungen zeigten, dass das dort bereits verankerte Beitragssatzziel nicht eingehalten werden kann
- ▶ Demographische Herausforderungen:
 - > Alternde Bevölkerung
 - > Sinkende Geburtenzahlen
- ▶ Ökonomische Ausgangssituation
 - > RV-Beitragssatz (2003): 19,5%
 - > Sozialabgaben gesamt: 42%
 - > Arbeitslosenquote bis 2005 auf über 11 %
 - > Immer mehr Selbstständige
 - > Nachwirkungen der Wiedervereinigung (Ost-West Transfer)
 - > Angebotsorientierte Wirtschaftspolitik



Ziele des Nachhaltigkeitsfaktors



- ▶ Senkung und langfristige Stabilisierung des Beitragssatzes
- ▶ Senkung der Lohnnebenkosten
 - > Positive Arbeitsmarkteffekte
 - > Anreize für private Altersvorsorge, da Haushalte mehr sparen können
- ▶ Langfristige Stabilisierung des Rentensystems
- ▶ Berücksichtigung demographischer Veränderungen in der Rentenanpassungsformel
 - > Demographische Lasten sollen gleichermaßen auf Beitragszahler und Rentner verteilt werden
 - > Intergenerationeller Ausgleich

Übersicht - Rentenanpassungsformel



Rentanpassungsformel (Berechnung für 2024)

Aktueller Rentenwert	=	Aktueller Rentenwert der Vorperiode	×	Lohnfaktor	×	Beitragssatzfaktor	×	Nachhaltigkeitsfaktor
ARW_t	=	ARW_{t-1}	×	$\frac{BE_{t-1}}{BE_{t-2}}$	×	$\frac{100 - AVA - BS_{t-1}}{100 - AVA - BS_{t-2}}$	×	$\left(\left(1 - \frac{RQ_{t-1}}{RQ_{t-2}} \right) \cdot 0,25 + 1 \right)$
39,31	=	37,60	×	1,0472	×	1,0000	×	0,9984
				+4,72 %		+0,00%		-0,16 %

Lohnfaktor vereinfacht dargestellt...
Greifen der Haltelinie i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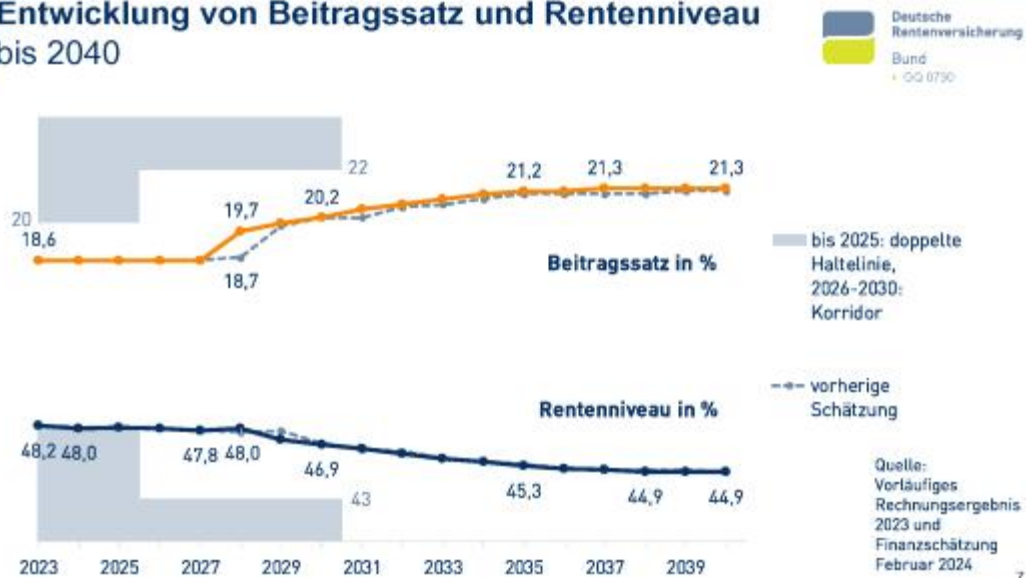
Formel des Nachhaltigkeitsfaktors

Nachhaltigkeitsfaktor 2024	=	(1 – Veränderung Rentnerquotient der Vorjahre) × 0,25 + 1		
RQ	=	$\frac{\text{Äquivalenzrentner } (\ddot{A}R)}{\text{Äquivalenzbeitragszahler } (\ddot{A}BZ)}$	$\ddot{A}R$	= $\frac{\text{Rentenvolumen}}{45 \times ARW + 12}$
			$\ddot{A}BZ$	= $\frac{\text{Beitragsvolumen}}{\text{Beitrag auf vDE}}$
NHF_t	=	$\left(1 - \frac{RQ_{t-1}}{RQ_{t-2}}\right) \cdot \alpha + 1$	α	= 0,25
0,9984	=	$\left(1 - \frac{16.376}{\frac{31.286}{16.299}}\right) \cdot 0,25 + 1 = \left(1 - \frac{0,5234}{0,5200}\right) \cdot 0,25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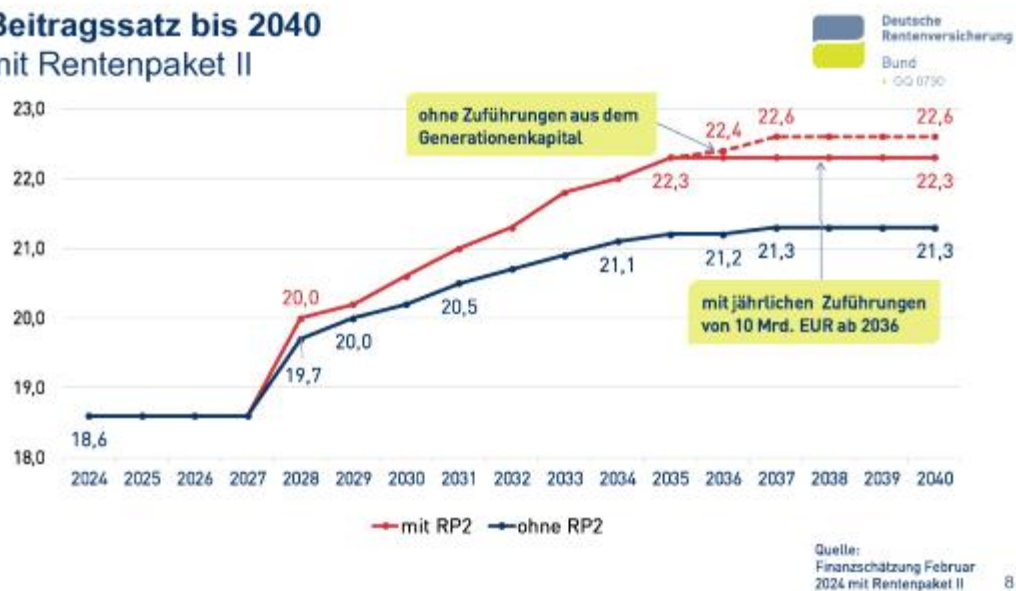
Wirkung des Nachhaltigkeitsfaktors seit seiner Einführung



Entwicklung von Beitragssatz und Rentenniveau bis 2040



Beitragssatz bis 2040 mit Rentenpake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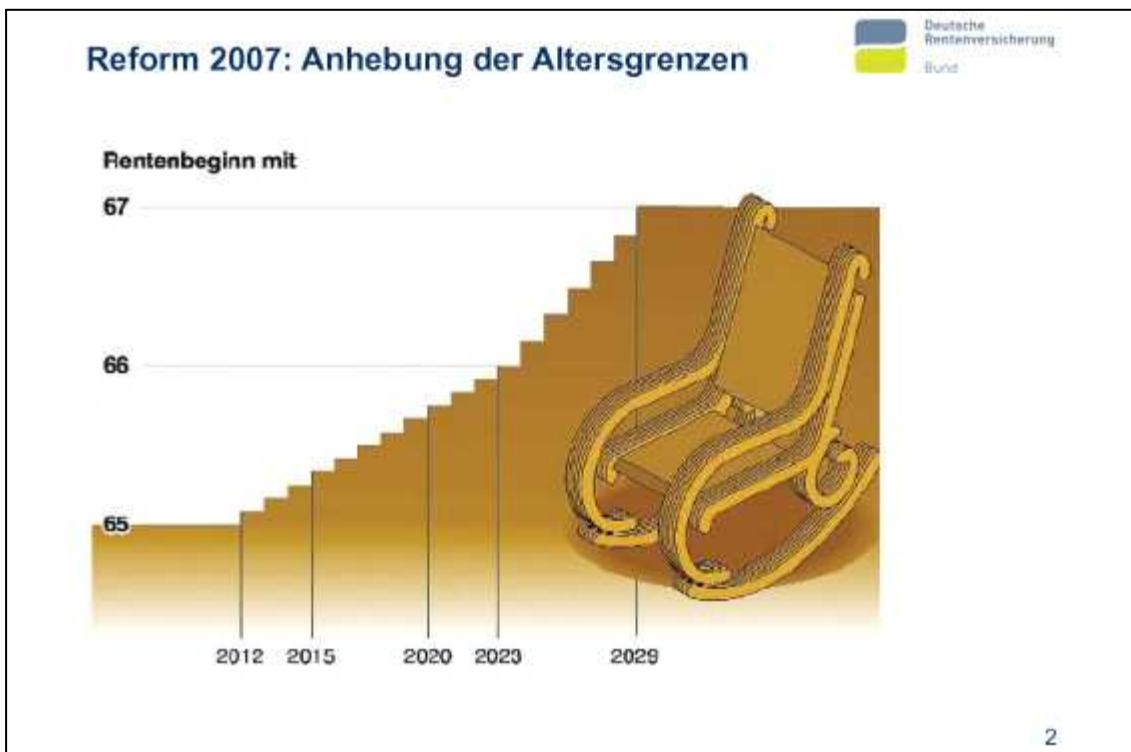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Nachhaltige Anhebung des
gesetzlichen Rentenalters in
Deutschland**

**Besuch einer koreanischen Delegation
Berlin, 12.04.2024**

Christoph Freudenberg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Abteilung Forschung und Entwicklung



Potentielle Erfolgsfaktoren der Reform 2007



- **Empfehlung wissenschaftlicher Kommission** (Rürup-Kommission 2003)
- **Breite politische Basis:** Regierung der „Großen Koalition“, die 69 % der Wählerstimmen vereinte, inkl. Gewerkschaftsnahe SPD, die Arbeitsminister als treibende Kraft stellte
- Sehr **graduelle Erhöhung** des Rentenalters
- Verbunden mit **Berichtspflichten** u.a. zu Arbeitsmarktchancen
- **Ausnahmeregeln** für besonders langjährig Versicherte (45 Beitragsjahre), 30 % aller Zugänge in die Altersrenten nutzen diese Regel
- **Gestützt durch** sehr gute **Arbeitsmarktlage** seit Umsetzung 2012

3

Positive Wirkungen



- **Fiskalisch:** Niedrigerer Beitragssatz möglich (geschätzt ca. 1,5 Prozentpunkte niedriger in 2030)
- **Rentenhöhe:** Je nach Perspektive Leistungserhöhung oder Minderung; Reform führte zu höherer Dynamisierung für Rentenbestand
- **Anstieg effektives Rentenalter:** + 0,5 Jahre (2012-2021); weiterer Anstieg um ca. 1 Jahr bis 2032 prognostiziert
- **Anstieg Erwerbsbeteiligung Älterer:** von 47 % in 2012 auf 63 % in 2022 in der Altersgruppe 60-64 Jahre

4

Herausforderung und Lösungsansätze



Jedoch **hoher Anteil, die es nicht schaffen bis zum Rentenalter zu arbeiten**

Vor Renteneintritt nicht in Erwerbstätigkeit	40 %
Vor Renteneintritt 2 oder mehr Jahre ohne Erwerbsarbeit	24 %

Quelle: Buslei et al. (2019)

- Lösungsansätze: Verbesserung Erwerbsminderungsrenten 2018 + 2024
- Präventionsprogramme: u.a. RV-fit, Ü45-Onlinecheck, betriebliche Gesundheitsförderung
- Verbesserungen für gleitenden Übergang in den Ruhestand: Seit 2023 Rente + Hinzuverdienst ohne Abzüge jederzeit möglich

5

Anhebung des gesetzlichen Rentenalters



Fazit

1. Es zeigen sich eine Reihe potentieller Erfolgsfaktoren für die nachhaltige Umsetzung der Erhöhung der Regelaltersgrenze.
2. Die Reform hatte (vermutlich) positive Effekte für die Finanzierung und Arbeitsmarktbeteiligung.
3. Eine Herausforderung bleibt, die Arbeitsmarktbeteiligung bis zur erhöhten Regelaltersgrenze. Vor diesem Hintergrund wurden bereits unterschiedliche Maßnahmen auf den Weg gebracht.

18

Die Riester-Rente: Ausgestaltung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Besuch einer koreanischen Delegation
Berlin, 12.04.2024**

Christoph Freudenberg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Abteilung Forschung und Entwicklung

Gliederung

- I. Konzept der Riester-Rente**
- II. Bisherige Ergebnisse**
- III. Probleme und Lösungsansätze**

Glieder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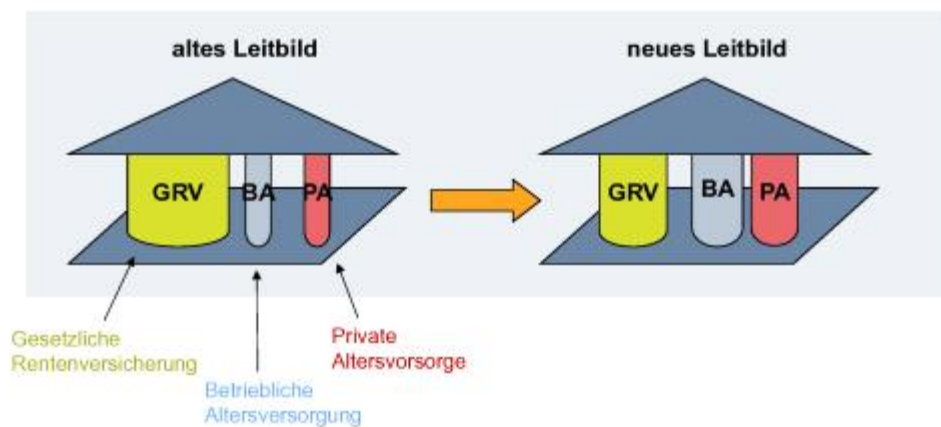
I. Konzept der Riester-Rente

II. Bisherige Ergebnisse

III. Probleme und Lösungsansät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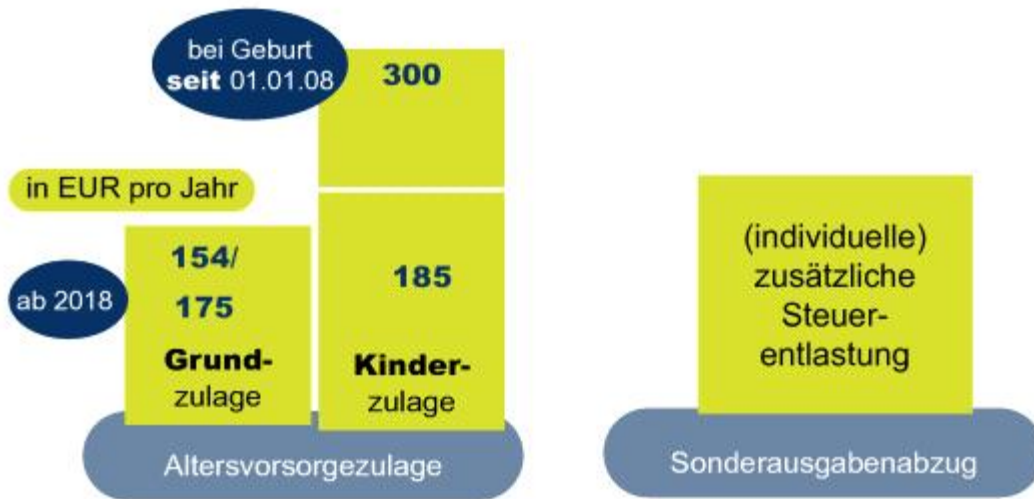
9

Leitbild seit 2001: Stärkung 2. + 3. Säule



10

Konzept der Riester-Rente



11

Konzept der Riester-Rente



Beispiel: Alleinstehende(r) ohne Kinder

Einkommen (rv-pflichtig) in Euro*	Eigenbeiträge in Euro	Zulagen in Euro	zusätzliche steuerliche Entlastung in Euro	Förderquote in %
10.000	246	154	0	39
35.000	1.246	154	290	32
50.000	1.846	154	607	38

Quelle: BMF, gültig für das Jahr 2015; * Einkommen im Vergleich zum Vorjahr unverändert

9

Konzept der Riester-Rente

Beispiel: Alleinstehende(r) mit einem Kind (nach 2007 geboren)

Einkommen (rv-pflichtig) in Euro*	Eigenbeiträge in Euro	Zulagen in Euro	zusätzliche steuerliche Entlastung in Euro	Förderquote in %
10.000	60	454	0	88
35.000	946	454	0	32
50.000	1.546	454	209	33

Quelle: BMF, gültig für das Jahr 2015; * Einkommen im Vergleich zum Vorjahr unverändert

10

Gliederung

I. Konzept der Riester-Rente

II. Bisherige Ergebnisse

III. Probleme und Lösungsansät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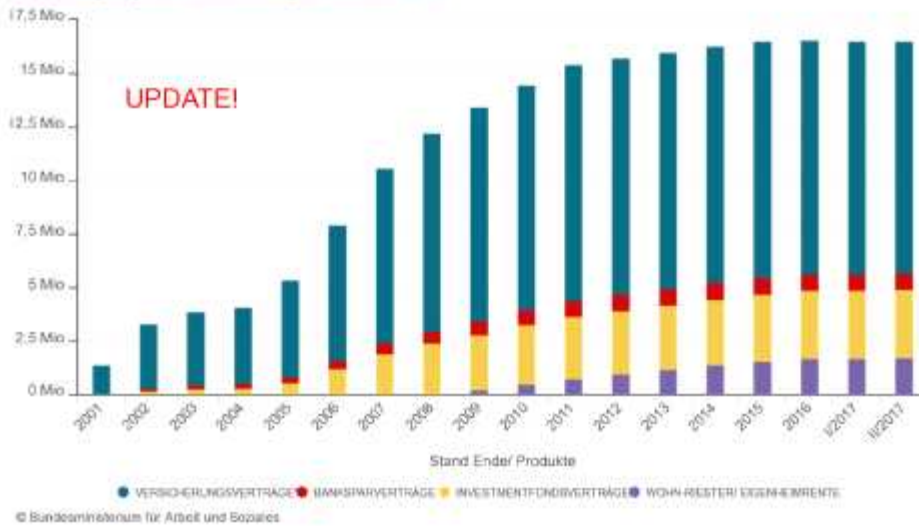
14

Bisherige Ergebnisse



Entwicklung der Vertragszahlen der Riester-Rente

Entwicklung der privaten Altersvorsorge (Stand: 28.9.201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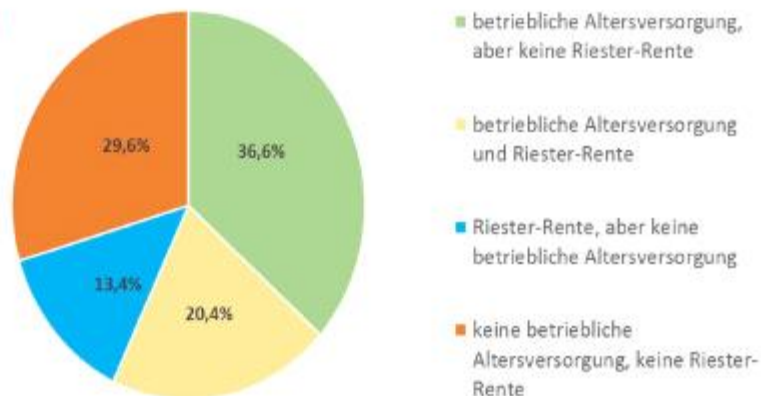
Bisherige Ergebnisse



Beteiligung an der zusätzlichen Altersvorsorge

- Anteil de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n im Alter von 25 bis 65 Jahre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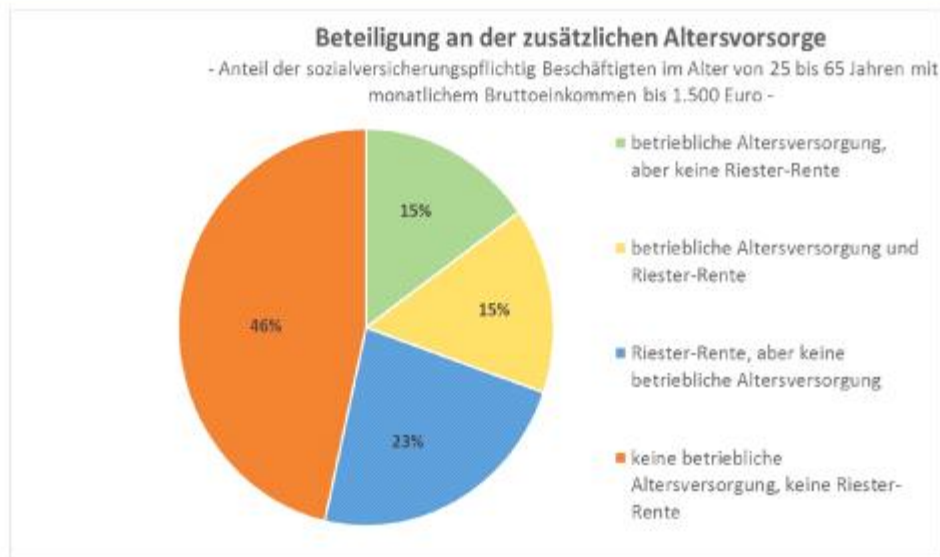
UPDATE!



Quelle: BMAS/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ASB 2016 bzw. Verbreitung der Altersvorsorge 2016, eigene Darstellung

14

Bisherige Ergebnisse



Quelle: BMAS/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ASB 2016 bzw. Verbreitung der Altersvorsorge 2015, eigene Darstel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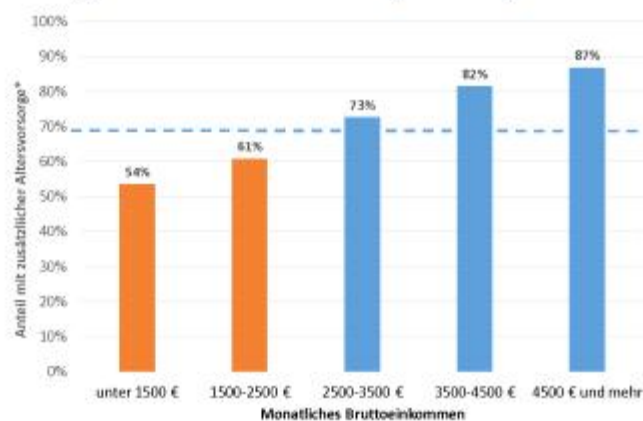
15

Herausforderung – Geringe Verbreitung



- Rund 70 % der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n sparen im Rahmen der betrieblichen und/oder privaten Altersvorsorge
- Jedoch gerade Niedrigeinkommensbezieher sorgen häufig nicht für das Alter vor:

UPDATE!



18

Aktueller „Erfolg“?



Verbreitung - Freiwillige Zusatzvorsorge in ausgewählten OECD Staaten



→ In Deutschland vglw. hohe Verbreitung zusätzlicher Altersvorsorge

19

Gliederung



- I. Konzept der Riester-Rente
- II. Bisherige Ergebnisse
- III. Probleme und Lösungsansätze**

20

Probleme und Lösungsansätze

- Bessere Transparenz der Riester-Produkte
 - Einführung des Produktinformationsblatts ab 2017
- Höhere Effizienz der Riester-Produkte notwendig
 - Wechselkosten bereits gesetzlich begrenzt **UPDATE!**
- Dynamisierung der staatlichen Förderung
 - Erhöhung der Grundzulage auf 175 Euro ab 2018
- bessere Informationen & „Finanzbildung“ (welche Vorsorgeprodukte sind geeignet?)
 - in der Schule beginnend
 - Ausweitung des Informationsauftrags der DRV zur zusätzlichen Altersvorsorge ab 2018
- Negative Sparanreize der Sozialhilfe-Systeme
 - Freibeträge für zusätzliche Altersvorsorge bei Sozialhilfebezug

17

Probleme und Lösungsansätze

Fazit

1. Die Riester-Rente bietet insbesondere für Frauen, Geringverdiener und Kindererziehende eine hohe staatliche Förderung.
2. Die Riester-Rente ist als ein wichtiges Förderinstrument der zusätzlichen Altersvorsorge mittlerweile etabliert.
3. Handlungsbedarf bei der Verbreitung der zusätzlichen Altersvorsorge besteht insbesondere bei Geringverdienern. Konkrete Maßnahmen zur verbesserten Attraktivität der Riester-Rente wurden bereits auf den Weg gebracht.

18